



안전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에서 조사 평가하는 제도

추진근거

*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법 제4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안전진단 종류

1) 진단주제에 따른 분류

*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 명령진단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2) 진단내용에 따른 분류

*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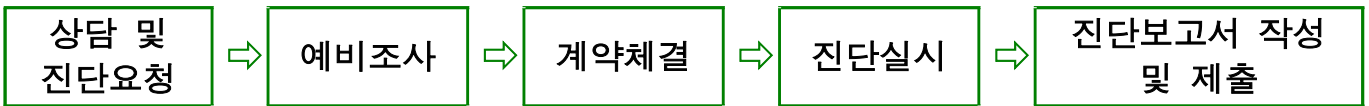
****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시스템 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2. 업무 처리 절차



3. 진단 비용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A) + 직접경비(B) + 제경비(C) + 기술료(D) ※ (A): 참여기술자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B): 교통비 등 실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120%, (D):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

4. 사업종류, 최소 종합진단일 수 및 진단참여 일수

1) 안전진단의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요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종류별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단,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
중위험	산재보험요율 15이상~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요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업종	

2) 최소 종합진단일수(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10인미만	7	6	5
10인이상~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50+(근로자수50)/20	MD=50+(근로자수50)/20

3) 일반 안전진단의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 제고

4) 건설 안전진단의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MD)

진단일수	기술사 참여일수	특급기술사 참여일수	비 고
5	-	3일	내업 및 외업
10	3일	7일	
15	5일	10일	
30	10일	15일	
50	15일	-	
70	30일	-	
150	50일	-	

5)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예시: '22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05,940	398,476	387,707	390,500	379,482	482,622	363,780
특급기술자	332,140	294,925	282,727	308,530	290,502	420,219	292,190
고급기술자	286,405	254,591	258,258	253,985	262,115	325,702	247,580
중급기술자	236,742	235,752	230,402	231,775	221,815	294,250	204,917
초급기술자	210,727	206,042	194,606	182,591	199,370	238,441	183,146
고급숙련기술자	247,467	251,294	207,847	218,613	216,523	293,964	218,687
중급숙련기술자	193,280	187,474	184,077	194,638	186,419	273,315	180,777
초급숙련기술자	175,259	167,322	155,003	169,084	173,122	174,680	143,332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5. (주)한국건설안전공사의 분야별 안전진단 범위(주요 내용)

* ** 건설 안전진단	* ** 일반 안전진단
- 안전관리체계 등 관리분야 - 건설안전 분야	- 안전관리체계 등 관리분야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

* ** 안전진단 주요내용(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14)

1.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5. 보호구, 안전 장비의 적정성

